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

금융투자업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-6조 중 "포함한다"를 "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단서와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.

- 1. 투자자문업
- 2. 투자일임업
- 3. 전문사모집합투자업
- 4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통한 투자중개업

제1-7조를 삭제한다.

제1-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-7조의2(전문투자자의 기준) ① 영 제10조제3항제17호라목에서 "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"이란 같은 호 가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년도의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 다.

② 한국금융투자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는 제1항의 소득액 및 재산

가액의 산정방법, 소득액 및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, 그 밖에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1-8조제1항 중 "한국금융투자협회(이하 "협회"라고 한다)"를 "협회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(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.)

제1-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라 목"을 "마목"으로 한다.

3.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영 제10조제3항제17호 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.)

제2-11조제1항제1호 중 "30억원을 초과할 것"을 "20억원 이상일 것"으로 한다.

제2-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금융투자업자가 「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·보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-24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.

- 가. 제2-2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 2-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점별 영업관리자가 지점별 파생상 품 영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는 내용
- 나. 본사 또는 인근 지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지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
- 제2-2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4.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
 - 가. 파생결합증권(「상법」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 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과 그 밖의 금융투 자업자의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(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·유지하는 것을 말한 다)하는 것에 관한 사항
 - 나. 가목의 구분 관리를 위하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 · 유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사항다.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대상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

제3-14조제4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자.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모사채
 - (1)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2-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수·양도될 것
 - (2) 신용평가사로부터 증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을 것
- (3) 증권에 관한 정보를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, 다수 의 적격기관투자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할 것 제3-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5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조건부자본증 권
- 제3-17조제1항제1호중 "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"을 "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, 제3-14조제4호자목에 따른 사모사채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4.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조건부자본증권 제3-2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0호 중 "해당하는 대출채권은"을 "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"으로 한다.
 - 9. 사모사채.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가. 제3-14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
 - 나. 제3-14조제4호자목 및 제3-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 - 다. 전환사채,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,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

사모사채인 경우

제3-66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제2-24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

- 가. 제2-24조제1항제4호가목의 구분 관리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별 운용내역
- 나. 제2-2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정한 투자대상 자산이 갖추어 야 할 요건의 내용과 준수 여부

제4-1조제1항 중 "직불전자지급수단의"를 "직불전자지급수단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만기 3개월 이내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"를 "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"로 한다.

제4-6조제1항을 삭제한다.

제4-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1)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
- 1. 주권비상장법인(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주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주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주권비상장법인은 제외한다) 또는 영 제 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일 것.
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업

무일 것.

- 가. 출자(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자신과 지정자문계약을 체결한 코 넥스시장 상장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- 나.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
- 다.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
- ④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2)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.
- 1.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 또는 영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
- 2. 영 제119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
- 3.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2-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채무증권
- 4. 영 제1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
- ⑤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8)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- 1, 기업금융부서가 영 제68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
- 2.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

- 가.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매입
- 나. 보유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가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특수목 적기구에 대한 출자

제4-7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.

제4-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영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"이란 영 제6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이 30종목이상 편입된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.

제4-17조의2 중 "영 제66조제3호"를 "영 제66조제4호"로 한다.

제4-20조제1항제9호나목(1) 중 "서명 또는 기명날인"을 "영 제132조제 2호에 따른 방법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.

다만, 금융투자업자와 물리적인 사무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(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)에게 공동영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4-23조제1항 중 "총 신용공여 규모"를 "총 신용공여 규모(이미 매도 된 증권의 매도대금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 서 같다)"로 한다.

제4-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 담보는 현금 또는 증권에 한하며, 추가담보를 징구함에 있어서는 가 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협회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제4-28조제3항 중 "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."를 "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."로 한다.

제4-29조를 삭제한다.

제4-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"로 하고, 제1호 중 "구성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일 것"을 "구성종목이 영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"으로 하며, 제2호 중 "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(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가능한 말을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는 값을 말

한다)"를 "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,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"으로 하고,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4-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-52조의2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) 영 제 80조제6항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"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 합투자기구를 말한다.

- 1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2배(음의 배율도 포함한다)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
- 2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의 일일 가격 변동폭이 전일종가(해당 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시 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을 말한다)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될 것
- 3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 용하지 아니할 것

제4-82조제1항을 삭제한다.

제4-10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-102조의5(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) 영 제77조의6제1호에서 "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"이란 매매 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.

제6-30조제1항 중 "영 제208조제2항제3호"를 "영 제208조의2제3항"으

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, 제4항 중 "제3항의 각호에서 "순보유잔고를 산정하는 기준시점""을 "영 제208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""으로 한다.

제6-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2항을 삭제하며, 제3항 중 "제1항의 요건"을 "영 제208조의2제4항의 요건"으로, "거래소"를 "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"로, "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"를 "순보유잔고가 음수인지를 판단한 후"로 하고, 제4항 중 "제1항에 따라"를 "영 제208조의2제4항에 따라"로 한다.

① 영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"이란 매도자별 순보유잔고에 기준시점의 증권 가격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.

제6-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-31조의2(순보유잔고의 공시) 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제3영업일이되는 날 증권시장(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)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해당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6-31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고유재산과 각각의 투자자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한다.

- 1.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
- 2. 매도자에 관한 사항: 성명, 주소, 국적, 생년월일(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,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를 말한다) 등의 인적사항(매도자의 대리인이 공시하는 경우 대리인의인적사항을 포함한다)
- 3.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: 순보유잔고가 영 제208조의3 제2항의 기준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
- ② 제6-3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준용한다. 제6-33조 중 "운영하는 자 및 제6-31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" 를 "운영하는 자"로 하고, "운영과 순보유잔고 보고의 진위 여부를"을 "독립거래단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"로 한다.
- 제7-11조의2 제목을 "의무해지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요건"으로 하고,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제1항 중 "영 제224조의2제1호 아목"을 "영 제224조의2제1호자목"으로 하고,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영 제224조의2제1호의2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
 - 1. 금융투자업자 또는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영 제224 조의2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수익자(이하 이 항에서 "수익자" 라 한다)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

원회로부터 자금의 통합운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하여 설정한 투자신탁일 것

- 2. 수익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
- ③ 영 제224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"란 영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제7-11조의4 제목을 "의무해지가 면제되는 투자회사의 요건"으로 하고,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제1항 중 "영 제231조의2제1호 아목"을 "영 제231조의2제1호자목"으로 하고,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영 제231조의2제1호의2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"이란 제7-1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"수익자"는 "주주"로, "투자신탁"은 "투자회사"로 본다.
- ③ 영 제231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"란 제7-11조의2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제7-26조제3항제2호다목 중 "100분의 85"를 "100분의 85(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75)"로 한다. 제7-2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운용

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으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집합투자증권의 최소단위를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8-78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우체국 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 별표 3 제1호가목(5)(가) 중 "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."를 "볼 수 없 거나 법 제448조,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 우를 제외한다."로 하고, 제4호 중 "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 사"를 "예금보험공사,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"으로 한다. 별표 5 제6호라목 중 "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"를 "예금보

별표 10 계량항목 중 "영업용순자본비율"을 "순자본비율"로 한다. 별표 19 제3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험공사,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"으로 한다.

다만,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 증권시장 또는 제7-26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에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것을 말한다)의 경우에는 각 집합투자재산의 100%까지 동일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시행한다.
 - 1. 제2-24조제1항제1호 : 2016년 10월 1일
 - 2. 제2-24조제1항제4호 및 제3-66조제1항제7호의2 : 2017년 1월 1일
 - 3. 제4-82조제1항 : 2018년 1월 1일
- 제2조 (신탁업무의 방법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제4-82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3조(순보유잔고 공시의 적용례) 제6-31조의2제1항은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인가심사 기준의 적용례) 별표3 제1호가목(5)(가)의 개정규정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5조(대주주변경승인 기준의 적용례) 별표5 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에 대주주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-6조(주요주주의 범위) 영 제9조제2호에서 "금융위원회	제1-6조(주요주주의 범위)
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"란	
임원(「상법」 제401조의2제1항	(
각 호의 자를 <u>포함한다</u>)인 주	포함한다. 이하
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	이 조에서 같다)
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	
유하는 자를 말한다. <u><단서</u>	
<u>신설></u>	
	<u>다만, 다음</u>
	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금융
	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금융
	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임원인
	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
	<u>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</u>
	소유하는 자를 말한다.
<u> <신 설></u>	1. 투자자문업
	<u>2. 투자일임업</u>
	3. 전문사모집합투자업
	4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
	을 통한 투자중개업
제1-7조(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	<u><</u> 삭 제>
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) 영	

제10조제3항제9호에서 "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"이란 영 제6조제1항 각 호 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 정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 <신 설>

제1-7조의2(전문투자자의 기준) ① 영 제10조제3항제17호라목 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기준"이란 같은 호 가 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년도의 소 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재산 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것을 말 하다.

② 한국금융투자협회(이하"협 회"라 한다)는 제1항의 소득액 및 재산가액의 산정방법, 소득 액 및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 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 위, 그 밖에 전문투자자 자격요 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데 필 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출) ① -----

제1-8조(전문투자자의 관련 자료 제1-8조(전문투자자의 관련 자료 제출) ① 영 제10조제3항제16 호가목 및 제17호가목에 따라

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제출인"이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한국금융투자협회(이하 "협회"라고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② 제1항의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~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③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관련자료를 접수받은 때에는 영제 10조제3항제16호나목·다목 또는 제17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 제출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ক্রুই
<u>.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(영 제
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
제출인에 한정한다.)
②
.
 1. ~ 2. (현행과 같음)
1. ~ 2. (현행과 같음)
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을 증
 ~ 2. (현행과 같음) 3.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영 제10조
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영 제10조 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
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영 제10조 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.)
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영 제10조 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.) ③
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영 제10조 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.)
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영 제10조 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.) ③
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영 제10조 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.) ③

④ ~ ⑧ (생 략) 제2-11조(외국환업무 등록요건) 제 ①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"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 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최근 결산기(반기결산을 포함한다)말의 자기자본(개별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

- 2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- 제2-16조(금융투자업자의 보고 7 사항) ① (생 략)

다)이 30억원을 초과할 것

② 금융투자업자는 영 제371조 제3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. <단서 신설>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제2-11조(외국환업무 등록요건)
①
1
<u>2</u> 0억원 이상일 것
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-16조(금융투자업자의 보고
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
2
다만, 금융투자업자가
· <u>의단</u> , 요하기 표시기 「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
규정」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

- 1. ~ 2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
- 제2-24조(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)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파생상품(파생결합증권 및 법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.이하이 조에서 같다)의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각 지점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. 다만, 본사 또는 인근 지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지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수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지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사항

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
독원장에게 신고·보고한 경우
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~ 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-24조(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
에 관한 내부통제) ①
<u>.</u>
1
<u>다</u>
만,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
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
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.
가. 제2-23조제1항제2호다목

<신 설>

2. · 3. (생 략) <<u>신 설></u>

-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-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점별 영업관리자가 지점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는 내용
- 나. 본사 또는 인근 지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 관리자가 해당 지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
- 2. · 3. (현행과 같음)
- 4.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
 가. 파생결합증권(「상법」

 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.
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

② (생략)

제3-14조(차감항목) 제3-11조제 1항에 따른 차감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.

- 1. ~ 3. (생 략)
- 4. 대출채권(콜론, 환매조건부

과 그 밖의 금융투자업자 의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 (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 내역을 구분하여 기록・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)하 는 것에 관한 사항

나. 가목의 구분 관리를 위하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・유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사항

다.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 자대상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

② (현행과 같음)

세3-14소(사감양곡)	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매수, 대출금, 매입대출채권, 사모사채, 제4-21조제1호다 목에 따른 신용공여 및 이에 준하는 거래를 말한다) 중 담보가액(담보물의 종류, 담 보가액 등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다)을 초과하는 금액. 다만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
가. ~ 아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·.
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
자.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
하는 사모사채
· (1)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
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적
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
만 양수・양도될 것
(2) 신용평가사로부터 증
 권에 대한 신용평가를
 받을 것
 (3) 증권에 관한 정보를 협
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
라 공개하고, 다수의 적
격기관투자자에게 청약
의 기회를 부여할 것

4의2. ~ 17. (생략)

제3-16조(주식위험액 산정) ① 제3-15조제1호에 따른 주식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.

1. ~ 4. (생 략) <u><신</u>설>

② ~ ⑥ (생 략)

- 제3-17조(금리위험액의 산정) ① 제3-15조제2호에 따른 금리위 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.
 - 1. 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, 기업어음(CP), 자산유동화증 권(ABS, ABCP), 양도성 예 금증서(CD),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증권

2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 ~ ⑨ (생 략)

4의2. ~ 17. (현행과 같음)
제3-16조(주식위험액 산정) ①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
라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조
<u>건부자본증권</u>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3-17조(금리위험액의 산정) ①
1. 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,
제3-14조제4호자목에 따른
<u> 사모사채,</u>
2. ~ 3. (현행과 같음)
4 ス치이취제 기키레기지 1
4.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 닌 조건부자본증권

- 제3-22조(신용위험액 산정) ① 7 제3-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 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.
 - 1. ~ 8. (생략)
 - 9. 사모사채(제3-14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사모사 채 및 전환사채, 비분리형신 주인수권부사채,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모사채는 제 외한다)

- 10. 대출채권(제3-14조제4호 10. -----(------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대 출채권은 제외한다)
- 11. ~ 12. (생 략) ② ~ ⑥ (생 략)

제3-22조(신용위험액	산정)	1
		- _

- 1. ~ 8. (현행과 같음)
- 9. 사모사채. 다만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.
 - 가. 제3-14조제4호 및 제4 호의2에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
 - 나. 제3-14조제4호자목 및 제3-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리위험액 산정대 상에 해당하는 경우
 - 다. 전환사채, 비분리형신주 인수권부사채,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모사채인 경우
 - ----- 따라 차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-----)
- 11. ~ 12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3-66조(업무보고서 등의 제 전출) ① 영 제36조제3항제11호 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8. (생략) ② ~ ⑩ (생략)

제4-1조(겸영업무) ① 영 제43조 저 제3항제10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"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 제13호에 따른 <u>직불전자지급수</u>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말한다.

세3-66조(업무보고서 등의 제
출) ①
,
1. ~ 7. (현행과 같음)
7의2. 제2-24조제1항제4호와
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
<u>가. 제2-24조제1항제4호가</u>
목의 구분 관리에 따른
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
통해 조달한 자금별 운용
<u>내역</u>
나. 제2-24조제1항제4호다
목에 따라 정한 투자대상
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
의 내용과 준수 여부
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⑩ (현행과 같음)
세4-1조(겸영업무) ①
<u>직불전자지급수</u>
단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
선불전자지급수단의

- ② 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"란 만기 3개월 이내의 프로젝트파 이낸성 대출업무를 말한다.
- ③ 영 제43조제5항제10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금융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- 1. ~ 2. (생 략)
- 제4-6조(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 류 차단)
 - ① 영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1. 영 제5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투자매매업,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을 경영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신 탁업자: 신탁업과 고유재 산 운용업무 간의 경우

②
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
③
,
1. ~ 2. (현행과 같음)
4-6조(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
<u>류 차단)</u>
<u><</u> 삭 제>

- 나.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· 투자 대매업 · 투자중 개업 이외의 투자매매업 · 투자중개업 또는 신탁 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: 집합투자업자 : 집합투자업자 : 집합투자업과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· 투자중개업 간의 경우
- 2. 영 제50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
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
 - 가.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 한 증권을 매도하거나, 모 집·사모·매출의 주선과 정에서 그 증권을 취득시 키는 업무
 - 나.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

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
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에
 따른 전자단기사채등, 영
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
 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

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 집·매출·사모의 주선업 모

- 3. 영 제50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가. 증권의 대차 또는 그 중개・주선이나 대리업무나.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중개・주선이나 대리업무다.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중개・주선・대리업무
- ② (생략)
- ③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1) 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 호 의 방법을 말한다.
- 1. 사채, 신주인수권증권 등

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

 매입
- 2. 비상장기업의 위험관리를위한 목적의 파생상품거래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1) 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
- 1. 주권비상장법인(법 제390조 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주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주권이 상장기준에

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주 권비상장법인은 제외한다) 또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일 것.

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일 것.
 - 가. 출자(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자신과 지정자문계 약을 체결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 - <u>나.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</u> 매입
 - <u>다.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</u> <u>품거래</u>
- ④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2) 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증권"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을 말한다.
- 1.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 또는영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

④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
2)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
고시하는 기준"이란 「증권의
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
」 제2-2조제2항제4호가목에
따른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
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
취득(제2호의 유동화 증권 발

행을 위해 자산유동화전문회 이 발행한 채권 사가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고, 금융감독원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 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・ 양수되는 채무증권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1. 채권상장법인, 영 제10조제 2항의 금융기관, 「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ᅟ 제5 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이 5,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 행한 증권이 아닐 것
- 2. 유동화증권(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| 에서 정하는 방 법으로 발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)으로서 제1호에 해당 하는 채무증권이 유동화자산 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
- ⑤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 5)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"란 코넥스시장 (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 스시장을 말한다)에 상장한

- 2. 영 제119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
- 3.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2-2조제2항제 4호에 따른 채무증권
- 4. 영 제183조제1항 각 호에 따 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 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

⑤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8) 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법인에 출자하는 업무를 말한다. 다만,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자신과 지정자문계약을 체결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⑥ (생략)

제4-7조의2(적정성의 원칙) 영
제52조의2제1항제2호에서 "금
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
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
권"이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
함에 있어 장외파생상품이나
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지 아

- 1, 기업금융부서가 영 제68조 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 까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 는 프로젝트에 집합투자재산 의 100분의 90이상을 운용하 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
- 2.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 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
 - <u>가.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</u> 매입
 - 나. 보유재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가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

⑥ (현행과 같음)

세4-7조의2(적정성의	원칙)

니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으로서 당해 집합투 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서 정 한 운용방침이나 투자전략이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 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 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 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 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 는 집합투자기구(당해 집합투 자기구가 연동하고자 하는 기 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가 시행령 제246조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고, 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 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 율과 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율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되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한다)의 집 합투자증권을 말한다. <단서 신설>

<u>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</u>
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
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
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
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

제4-16조(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) <신 설>

① · ② (생 략)

제4-17조의2(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) 영 제66조제3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다.

1. · 2. (생 략)

제4-20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 제4-20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 지)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 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"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말한다.

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.

제4-16조(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)

- ① 영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파생결합증권"이란 영 제 6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이 30종목 이상 편입된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 합증권을 말한다.
- ② · ③ (현행 제1항 및 제2항 과 같음)

제4	-17조	:의2	(자기	계약	의	금지	의
à	ᅨ외)	영	제66	조제	<u> 1호</u> -		
_							
_							
_							
_		•					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ス]) ① -----

- 1. ~ 8. (생략)
- 9.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

가. (생략)

-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 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 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.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.
 - (1) <u>서명 또는 기명날인으</u> 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 하는 경우
 - (2) (생략)
- 10. ~ 11. (생략)
- 12. 수수료의 지급 등과 관련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
 - 가. 국내·외에서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(투자권유대행인을 제 외한다)에 대하여 거래대

1. ~ 8. (현행과 같음)
9
가. (현행과 같음)
나
,
 (1) <u>영 제132</u> 조제2호에 따
(1) <u>8 세102도세2모에 따</u> 른 방법
<u>亡 6日</u>
(2) (현행과 같음)
10. ~ 11. (현행과 같음)
12
가

금,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 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 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<단서 신설>

나. (생략) 13. ~ 14. (생략) ② (생략)

제4-23조(신용공여의 회사별 한 도)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 자중개업자의 <u>총 신용공여 규</u> 모는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하되, 신용공여 종류별로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의 구체적인 한도는 금융위원 회 위원장이 따로 결정할 수 있다.

<u>다만,</u> 금융투자업
자와 물리적인 사무공간
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
영업하는 금융기관(영 제
10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
관을 말한다)에게 공동영
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
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나. (현행과 같음)
13. ~ 14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4-23조(신용공여의 회사별 한
도) ①
총 신용공여 규
모(이미 매도된 증권의 매도
대금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는
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
다)
<u>4)</u>

② (생략)

제4-25조(담보비율 등) ① ~ ⑤ (생 략)

⑥ 제3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에 한한다.

⑦ (생략)

제4-28조(임의상환방법) ①·② (생 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.

④ · ⑤ (생 략)

제4-29조(신용거래 등의 제한)

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-25조(담보비율 등) ① ~ 제4-25조(담보비율 등) ① ~

- ⑤ (현행과 같음)
- ⑥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가 제3항에 따라 정구 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증권에 한하며, 추가담보를 징 구함에 있어서는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협 회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 할 수 있다.
- (7) (현행과 같음)

제4-28조(임의상환방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(3)	 	 	 	

 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

 라 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<u><삭 제></u>

-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는 투자자계좌의 순재산 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투자 자에 대해서는 신규로 신용거 래를 하지 못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순재산액은 투자자의 신용공여계좌에 있는 자산의 평가금액 합계액에서 신용공여금액의 합계액을 차감 한 금액을 말한다.
- ③ 제2항의 순재산액을 계산함 에 있어 자산의 평가금액 등은 투자자의 매매거래의 결제를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.

제4-52조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4-52조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) 영 제80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"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

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 수집합투자기구로서 당해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 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

- 1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<u>구성종목</u> 수가 30종목 이상일 것
- 2. 당해 상장지수 집합투자기 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(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접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학으로 나는 값을 말한다)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- 3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 251조 제2항에 따른 추 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

<u><신 설></u>

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 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

-----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이상이고,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 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

합으로 나눈 값 -----

<삭 제>

제4-52조의2(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) 영 제80조제6항에서 "금

용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 합투자기구"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 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

- 1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 의 2배(음의 배율도 포함한 다)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하 는 것을 목표로 할 것
- 2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일일 가격 변동폭이 전일종가(해당 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을 말한다)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될 것
- 3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재산을 장외파생 상품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제4-82조(신탁업무의 방법 등) <삭 제>

제4-82조(신탁업무의 방법 등) 제4-82조(신탁업무의 방법 등)
① 영 제104조제1항 단서에서
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
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신
탁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을

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1. 신노후생활연금신탁(노후생 활연금신탁을 포함)
- 2. 연금신탁(신개인연금신탁 및 개인연금신탁을 포함)
- 3. 퇴직일시금신탁
- ② (생략)

<신 설>

제6-30조(공매도의 제한) ① 이 조에서 "공매도"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으로 인하여 영 제 20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음수(-) 의 값을 가지게 되거나 음수 의 값을 가진 순보유잔고의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는 청약 또는 주문을 말한다.

② 영 제208조제2항제3호에서 <삭 제>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증권"이란 법 제9조제15항 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-102조의5(종합금융투자사	업
자의 업무) 영 제77조의6제1	<u>호</u>
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	고
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	수
량 기준"이란 매매주문 금액	0]
1억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.	
제6-30조(공매도의 제한) ①	

208조의2제3항-----

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.

- ③ 영 제208조제2항제3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잔고" 란 증권의 종목별로 제1호의 수량에서 제2호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.
- 1. 보유총잔고 : 매도자가 순보유잔고를 산정하는 기준시점"이라 한점(이하 "기준시점"이라 한다)에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.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(법률의 구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·투자일임계약, 그 밖의계약 등에 의해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권한을 타인이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 - 나. 법률의 규정이나 그 밖
 의 계약에 따라 타인에게
 대여중인 증권의 수량
 다.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
 신탁계약·투자일임계약,

<u><삭</u> 제>

그 밖의 계약 등에 의해 타인을 위해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에 상응하 는 수량

- 라.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 나 매매, 계약 등에 따라 인도받을 증권의 수량
- 2. 차입총잔고 : 매도자가 기준시점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다음 각목의 수량을 합한수량
 - 가. 기준시점 이전에 차입한 이후, 기준시점에 해당 차입증권을 상환하지 않 은 수량
 - 나.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

 나 매매, 계약 등에 따라

 인도할 의무가 있는 증권

 의 수량
- ④ 제3항의 각 호에서 "순보 유잔고를 산정하는 기준시점" 이란 매 영업일 24시를 말한 다. 다만, 매도자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제1항에 따른 공 매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

우에는 해당 청약 또는 주문 을 내기 직전을 말한다.

⑤ (생략)

제6-31조(순보유잔고의 보고) ① 제6-31조(순보유잔고의 보고) ① 영 제208조제2항제3호에서 "증 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"이란 매도자별 로 해당 증권의 종목별 발행총 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비율(이하 "순보유잔고 비율" 이라 한다)이 음수(-)로서 그 절대값이 10,000분의 1이상이 되거나 10.000분의 1이상의 비 율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. ② 영 제208조제2항제3호에서 각각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거래"란 법 제393조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 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을 위한 상장 주식의 매도·매수 또는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에 따른 손실 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상

⑤ (현행과 같음)

영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에 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 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방법"이란 매도자별 순보유잔고에 기준시점의 증 권 가격을 곱하는 방법을 말 한다.

<삭 제>

③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보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 터 제3영업일 오전 9시까지 금 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 야 한다. 다만 금융기관이 제 6-30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 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 산별. 신탁재산별(집합투자기구 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 기구를 말한다), 그 밖의 투자 자재산별로 제1항의 사유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해 당 순보유잔고 비율을 합산하 여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 여야 한다.

장주식의 매도·매수를 말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④ 제1항에 따라 순보유잔고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 정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.
- 1. ~ 8. (생 략)
- ⑤ · ⑥ (생 략)

③ 영 제208조의2제4항의 요
<u>건</u>
<u>해당 증권이 상장</u>
<u>된 거래소</u>
순보유잔고가 음수
<u>인지를 판단한 후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④ <u>영 제208조의2제4항에 따라</u>
1. ~ 8. (현행과 같음)
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6-31조의2(순보유잔고의 공 시) 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유발생일로 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 증 권시장(시간외 시장을 포함한 다)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해당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제6-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,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 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하여 순보유잔고 비 율을 산정할 때에는 고유재산 과 각각의 투자자재산을 구분 하지 아니한다.

- 1.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
- 2. 매도자에 관한 사항: 성명, 주소, 국적, 생년월일(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,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 자등록번호를 말한다) 등의 인적사항(매도자의 대리인이 공시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 적사항을 포함한다)

<신 설>

제6-33조(자료의 제출) 금융감 지 독원장은 제6-30조제5항에 따라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 및 제6-31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독립거래단위 운영과 순보유잔고 보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-11조의2(의무해지가 면제되 전 는 수익자가 1인인 공제회·공 제조합) 영 제224조의2제1호 아목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"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~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3.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
한 사항 : 순보유잔고가 영
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
계속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
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
② 제6-31조제5항 및 제6항은
제1항에 따른 공시에 준용한
<u>다.</u>
제6-33조(자료의 제출)
<u>운영하는</u>
<u>자 독립거</u>
래단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
제7-11조의2(<u>의무해지가 면제되</u>
는 투자신탁의 요건) ① 영
제224조의2제1호자목
1. ~ 2. (현행과 같음)

② 영 제224조의2제1호의2에

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을 말한다.

- 1. 금융투자업자 또는 법 제32 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영 제224조의2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수익자(이하 이 항에서 "수익자"라 한다) 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지 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 위원회로부터 자금의 통합운 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받 아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 업자를 선임하여 설정한 투 자신탁일 것
- 2. 수익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을 다른 집<u>합투자기구에 투</u> 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 ③ 영 제224조의2제1호의2마 목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"란 영 제10조제2 항제9호 및 제10조제3항제5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<신 설>

제7-11조의4(의무해산이 면제되 제7-11조의4(의무해산이 면제되

는 주주가 1인인 공제회·공제 조합) 영 제231조의2제1호아 목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"란 제7-1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7-26조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저의 요건) ① · ② (생 략)

③ 영 제246조제3호에서 "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" 중 증권종목의 가격수 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 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수의

는 투자회사의 요건) ① 영
제231조의2제1호자목
② 영 제231조의2제1호의2에
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
시하는 기준"이란 제7-11조의
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
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
우 "수익자"는 "주주"로, "투
자신탁"은 "투자회사"로 본다.
③ 영 제231조의2제1호의2마
목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
고시하는 자"란 제7-11조의2
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자를 말한다.
제7-26조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
의 요건) ① ·② (현행과 같
<u>수</u>)
③

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 권인 경우

가.~ 나. (생략)

다.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(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)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(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을 말한다)이 1억원 이상일 것

④ (생 략)

제7-27조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의 최소단위) 영 제247조제3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단위"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

 1. (현행과 같음) 2
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 다
<u>100분의</u>
85(지수를 구성하는 종목
의 수가 200종목 이상인
<u> 경우에는 100분의 75)</u>
④ (현행과 같음)
7-27조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
의 최소단위)

립에 필요한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소수 량으로서 신탁계약 또는 투자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수량을 말한다. <단서 신설>

1. ~ 10. (생 략) <신 설>

② · ③ (생 략) 별표3

1. ~ 10. (현	행과 같음)
11. 「우체국	예금·보험에 괸
한 법률」이	마른 체신관서
② · ③ (현	행과 같음)

별표3

-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
 의 요건
 - 가. 대주주가 「금융위원회의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(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며, 이하 "금융기관"이라 한다)인 경우 (영별표2 제1호관련)
 - (1) ~ (4) (생략)
 - (5)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. 다만, 그 위반 등의 정도가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.
 - (가) 최근 5년간 법, 영, 금 융관련법령(영 제27조제1 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」및「조세 범처벌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. 다 만,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

.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
의 요건
7}
(1) ~ (4) (현행과 같음)
(5)
•
(フト)

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 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.

(나) · (다) (생 략)

(6) (생략)

나. ~ 사. (생 략)

- 2. · 3. (생략)
- 4. 대주주가 정부, 예금보험공 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 하다.

별표5

- 1. ~ 5. (생 략)
- 6. 특례

가. ~ 다. (생 략)

라. 대주주가 정부, 예금보험 라. ----- 예금보험 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 공사인 경우에는 제1호부 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	볼 수
없거나 법 제448조,	
에 해당 법률의 양벌	
에 따라 처벌을 받은	- - 경우
를 제외한다.	

- (나)·(다) (현행과 같음)
- (6) (현행과 같음)

나. ~ 사. (현행과 같음)

- 2. · 3. (현행과 같음)
- 4. ----- 예금보험공 사,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-----

별표5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6. 특례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공사,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----

별표10

계량항목

- · 영업용순자본비율Ⅱ
- 자기자본비율

별표 19

- 1. ~ 2. (생 략)
- 3. 운용제한

가. ~ 다. (생 략)

라. 각 집합투자재산의 20% 를 초과하여 동일 부동산 또는 상품에 투자하지 않 을 것. <단서 신설>

마. ~ 카. (생 략) 4. ~ 10. (생 략)

별표10

계량항목

- · 순자본비율Ⅱ
- · 자기자본비율

별표 19

- 1. ~ 2. (현행과 같음)
- 3. 운용제한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 -----

----. 다만, 외국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(상장지수집 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 으로서 해외 증권시장 또 는 제7-26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에 집합투자증 권이 상장된 것을 말한다) 의 경우에는 각 집합투자 재산의 100%까지 동일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.

마. ~ 카. (현행과 같음) 4.~10. (현행과 같음)